

## A Study on the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Kyoung-hee Baek\*

---

### Abstract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the effect of learning is existence of students who have undergone dissection experiments on living anima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minor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issection experiment are that it undermines the right to life of the animal, which is the object, and that underage students can confuse the spiritual impact and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anatomy.

Since the regulations on animal experiments in Korea have been stipulated by the law since 200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not accepted as subject to carry out animal experiments in Korea's legal system. In current curriculum, there is no education about bioethics, animal rights, animal experiment ethics before animal experiment. In addition, there is no systematic education and guidance on animal experiment ethics and procedures for teachers who lead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as well a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animal management and disposal procedures before and after animal dissection experi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Act on Animal Welfare does not directly limit the experiment of animal dissection of minors. However, in each state, when a minor student conducts an animal dissection at school, he or she is entitled to take alternative assignments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experiment, depending on the student's ethical and religious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allow the ministry animal dissection experiment of minor students to be allowed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animals, educational purpose and the safety of dissection experiment.

---

*Keyword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ealth Care Policy, Medicalization, Parental Responsibility, Reproductive Responsibility*

---

---

\*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school

## I. 서론

동물실험은 인간을 질환으로부터 해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학학을 비롯한 생명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실생활에서도 화장품과 자동차<sup>1</sup> 등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동물실험인 동물 해부 실험의 경우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일반적인 동물실험과 달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여 얻게 되는 실익이 존재하는지 문제되고 있다.<sup>2</sup> 즉,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인지 및 시행의 가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문을 지니고 있어 그 가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생물, 과학 등의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동물의 생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재학원 등의 사설교육기관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의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 해부 실험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중·고교 생체실험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물로 115,325 개체가 해부 실험에 사용되었다고 한다.<sup>4</sup> 그런데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동물 생체에 대한 해부 실험이 유년시절의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나 실험동물윤리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이루어지는 동물 해부 실험은 오히려 생명경시 등의 잘못된 인식을 미성년자에 심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sup>5</sup>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통일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동물 해부 실험 전에 생명윤리나 동물권, 동

<sup>1</sup>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2014년 미국 소재 러브레이스 호흡기연구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원숭이 10마리를 동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2018. 1. 30. 자머니투데이 기사, 더터머니에 눈 먼 폭스바겐 ... 생체실험 어떻게 했다?

<sup>2</sup> 동물실험과 관련된 동물윤리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하대정,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266-274면.

<sup>3</sup>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5-46면.

<sup>4</sup>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017. 7), -“국민생각함” 활용 여론수렴 계획- 초·중·고등학교생 대상 교육에서 동물생체해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sup>5</sup> 실제 인천 초등생 여아 살해 사건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16세 소녀의 경우 고양이를 죽여 해부하거나 해부학 책에 심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황이 여아 유괴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7. 4. 2.자 아주경제 기사, 동춘동 8세 유괴살인 10대 소녀, 범행 동기 미국 “고양이 죽여 해부” 정신 감정 가능성

물실험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실험 전과 후의 동물의 관리와 폐기 절차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동물 해부 실험을 주도하는 교사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와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지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인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그 해석을 살펴보고, 미성년자의 동물생체 해부실습이 연방법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율적 규제 측면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국 각주의 사례를 비교·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법적 규제

### 1. 동물실험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정

#### (1) 동물보호법의 개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 5. 31.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 당시 실험동물이나 동물실험에 관한 별도의 정의나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도로 실험동물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농림부는 2005년에 들어서면서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시설의 실사를 위한 동물윤리위원회의 구성, 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에 대한 금지와 같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같은 해 10월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sup>6</sup> 「동물보호법」은 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의 원칙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율을 두게 되었다.<sup>7</sup>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

<sup>6</sup>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Ka60lYTqo5iVT39WPEsP Z8XxJpKfP5v tQ ID0cF9cERA1aVKL9aeaYxDeE4aGRI1N.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071&mappingLbicId=2000000123102&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0260](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Ka60lYTqo5iVT39WPEsP Z8XxJpKfP5v tQ ID0cF9cERA1aVKL9aeaYxDeE4aGRI1N.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071&mappingLbicId=2000000123102&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0260)(법제처 입법예고, 2018. 3. 25. 최종 방문)

<sup>7</sup> 법률 제8282호 「동물보호법」 2007. 1. 26. 전부개정이유

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sup>8</sup> 이 중 제8호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초·중·고등학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될 수 없다.<sup>9</sup>

「동물보호법」 법 제24조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등과 같은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한 실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sup>8</sup>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 12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sup>9</sup>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2항),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고(제3항),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4항),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한 후,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제5항), 그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제6항).

##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요

우리나라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종래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영역에 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과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 동물실험절차에서의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2001. 3. 20. 식품의약품안전청 동물자원과로부터 실험동물관리법안 제안된 바 있고,<sup>10</sup> 16대 국회에서는 김홍신 의원이 ‘실험동물법안’을,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의원이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신상진 의원이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17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9월 18일, 11월 16일, 11월 20일 3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2007. 11. 20.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채택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 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 3. 28. 법률 제9025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의 정의에 대하여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시행기관’과 별도의 개념으로 ‘동물실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는 이를 구체화하였고, 대표적으로 「식품위생

<sup>10</sup> 박창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당성에 대한 검토,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지 제2권 제2호(2008. 8), 37면.

법」에 따른 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제1호 가목),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제2호)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하고(동법 제3조),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8조, 제11조 및 제27조). 또한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제7조), 실험동물의 사전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2조, 제16조, 제30조 및 제31조). 한편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폐쇄, 소독, 살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18조),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제21조).

## 2. 2016. 11. 29. 법제처의 법령해석<sup>11</sup>

2016. 11. 29.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며,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법제처는 당시 현행 관련법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동물실험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상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학대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등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을 지칭한 것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금지되는 동물학대로 제8조에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sup>11</sup> 법제처(2016. 11. 29), 법령해석보도자료,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5·9면.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1항 제2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와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항 제1호 본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제2항 제2호 본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된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 해부 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3.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의 및 검토보고서의 내용

의안번호 6173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로<sup>12</sup>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3월 현재 대안으로 제안되어 계류 중에 있다.<sup>13</sup> 동 법률안은 현행법상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같이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 법률안에서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 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안 제24조의2<sup>14</sup> 및 제47조제1항 제5호의2<sup>15</sup> 신설).<sup>16</sup>

동 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sup>17</sup>

### 4. 검토

<sup>12</sup> 홍의락, 김상희, 서영교, 우원식, 변재일, 박정, 박재호, 한정애, 표창원, 이정미 의원

<sup>13</sup> 국회(2017. 12. 1), 제35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2호 14면.

<sup>14</sup>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15</sup>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한 자

<sup>16</sup>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P7J003K1N50I4Z45X0X0Y2R6W9N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P7J003K1N50I4Z45X0X0Y2R6W9N6) (2018. 3. 24. 최종 방문)

<sup>17</sup> 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각주 3), 44-48면.

동물 해부 실험의 성격은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의 범주에 포함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도 아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의 ‘동물실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에 의한다면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해부 실험은 법에서 정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니지 아니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법에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 법제처의 해석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규율한 동물실험의 정의,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사후의 절차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동물실험의 원칙만을 준수한다면 주체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초·중·고등학교의 동물 해부 실험에 있어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큼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동물윤리에 관한 선행 교육과 학생들의 동물 해부 실험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에 대한 차단 및 대안의 마련, 그리고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인데, 법제처의 해석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동물권이나 동물생명윤리, 실험동물에 관한 법제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이 교과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sup>18</sup>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동물 해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생명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다. 동물실험을 직업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공포와 불안, 분노와 죄책감, 슬픔, 혼동, 우울, 집중력 결핍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현기증, 두통, 무기력,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 신경과민, 동물에 대한 무관심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sup>19</sup>을 감안한다면, 동물실험윤리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이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은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sup>20</sup>

최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비록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동물을 해부하는 실험에 참여·관찰하게 하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윤리의식

<sup>18</sup>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를 분석한 조사 결과, 전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생명존중에 관하여만 설명할 뿐 동물의 생명과 권리, 동물보호 방안에 대한 관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동물 윤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생태중심주의적 윤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동물권에 대한 개념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 유동미·모효정, “동물실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14. 1), 340면, 이향연, 박선자, 유정숙, 이신영, 장지영,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2009), 237-239면

<sup>19</sup> 모효정,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 제9권 제3호(2016), 142면.

<sup>20</sup> 이선영, 이재영, 김인호,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6권 제4호(1998), 454-458면.



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혼란스러운 학생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거세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동물 해부 실험을 정서의 성숙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배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7년도 이후로, 당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험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이를 법제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목적과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균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Ⅲ. 미국의 미성년자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 1. 동물실험절차에 관한 미국 법제

##### (1)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의 개요

미국의 「동물복지법」은 196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원래의 법률명은 실험동물복지법(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이었고, 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은 연구, 애완동물, 사용 또는 전시를 위해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결정한 살아 있거나 죽은 동물이 포함된다. 특히 1985년도 개정된 「실험동물의 개선된 표준에 관한 법률(Improved Standards for Laboratory Animals Act)」의 부분은 동물실험절차에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률은 ‘① 동물의 사용은 사람과 동물 모두를 괴롭히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치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 ②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은 일부 목적을 위해 전통적인 동물 실험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 방법의 개발을 위한 추가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 ③ 불필요한 동물 실험의 중복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조치에 대하여 연방 기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④ 실험실 동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조치는 연구

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미국의 동물복지법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목적의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2) 테스트, 연구 및 훈련에 사용되는 척추동물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미국 정부의 원칙(U.S. Government Principles for the Utilization and Care of Vertebrate Animals Used in Testing, Research, and Training)<sup>22</sup>의 개요**

미국정부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지식의 개발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함께 생체 내 실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미국정부기관이 척추동물의 사용과 관련된 시험, 연구 또는 훈련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이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후원할 때에는, 첫째, 동물의 운송, 관리 및 사용은 동물복지법 등의 지침 및 정책에 따라야 할 것, 둘째, 동물과 관련된 절차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과의 관련성, 지식의 발전 또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 셋째, 절차를 위해 선택된 동물은 적절한 종과 품질이어야 하며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이어야 할 것, 넷째, 건전한 과학적 관행과 일치하여야 하며 동물의 불편, 고통의 회피 또는 최소화와 같은 동물의 적절한 사용을 행할 것, 다섯째, 순간적 또는 경미한 통증이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처치는 적절한 진정, 진통 또는 마취로 수행해야 하며 외과적 또는 다른 고통스러운 절차는 화학 약품에 의해 마취되지 않은 동물에게는 수행하지 말 것, 여섯째, 실험 후 심각한 만성 통증이나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될 경우 해당 동물은 시술과정이나 시술 종료 후 안락사를 시킬 것, 일곱째, 실험동물의 생활 조건은 해당 종에 적합해야 하며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의학 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동물의 주거, 먹이기 및 돌봄은 수의사 또는 숙련된 다른 과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여덟째, 연구자는 동물실험절차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 중 그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 아홉째, 이 원칙의 조항과 관련하여 예외가 요구되는 경우, 그 허용여부에 관한 결정은 직접 관련된 연구자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며, 제도적 동물 관리 및 사용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기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 요구된다.

### **(3) 미국실험동물학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AALAS)의 자율규제**

<sup>21</sup> <https://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hrea1985.htm>(2018. 3. 24. 최종 방문)

<sup>22</sup> <https://grants.nih.gov/grants/olaw/references/phspol.htm#USGovPrinciples>(2018. 3. 24. 최종 방문)

미국실험동물학회는 학계, 정부 및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용된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회로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치료와 처치, 사람과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과학적 연구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험, 연구 및 훈련에 사용되는 척추동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미국 정부의 법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율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실험동물학회는 학계 내에서의 자정작용으로써 위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배치된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에 관한 논문을 미국 내 학회지의 편집인이 게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함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내에서 이루어진 세부적인 동물실험절차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동물 이용 지침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sup>23</sup>

## 2.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험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수행할 때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sup>24</sup> 이는 연방법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법에서 소위 ‘학생선택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sup>25</sup> 법 규정은 없으나 주정부 또는 주교육청에서 학생선택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sup>26</sup> 이외에 동물해부실험 여부나 그 통제를 주의 각 지방교육구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sup>27</sup>

### (1) 학생선택법(Student Choice Laws)이 있는 경우

학생선택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교육법에 명문화하는 경우와 공법(Public Law)에서 명문화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예로는 캘리포니아를, 후자의 예로는 일리노이주를 들 수 있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경우 1988년에 「교육법(Education Code)」 2.3.장 ‘학생의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동물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Pupils’ Rights to Refrain From the Harmful or Destructive Use of Animals)’의 § 32255.1-32255.6에서 규율하고 있다. § 32255는 동물, 대체 교육 과제, 학생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 32255.1.에서는 학생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거부권을, §

<sup>23</sup> [http://www.aalas.org/about-aalas/position-papers\(2018. 3. 24. 최종 방문\)](http://www.aalas.org/about-aalas/position-papers(2018. 3. 24. 최종 방문))

<sup>24</sup> Marcia Goodman Kraemer, “HUMANE EDUCATION, DISSECTION, AND THE LAW”, Animal Law Vol. 13(2006), pp. 284-285, Joshua D. Hoes, 2004 LEGISLATIVE REVIEW, Animal Law Vol. 11(2005), pp. 357-359. Emeline Clermont, 2003 LEGISLATIVE REVIEW, Animal Law Vol. 10(2004), pp. 393-394.

<sup>25</sup>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등

<sup>26</sup>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간, 뉴햄프셔, 뉴멕시코 등

<sup>27</sup>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등

32255.3. 및 § 32255.4에서는 교사의 동물해부실험과 관련된 권리를, § 32255.5.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규율하고 있다. 이법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1-12학년까지의 모든 공립학교와 그 교육과정에 입학한 18세 미만의 학생이다. 그리고 동물 해부 실험의 대체 교육 과제는 비디오 레코딩, 모델, 영화, 서적 및 컴퓨터의 사용이 포함되는 동물 해부 실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정보 또는 경험을 얻기 위한 대체 수단을 의미한다, 학생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거부권의 인정과 절차에 대하여 § 32255.1.에서 자세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a) 동물 또는 그 일부를 해부하거나 손상, 도살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해당 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학생이 동물 해부 실험 등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해당 교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대체 교육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학생과 협력하여야 한다, (c) 대체 교육 과제는 동물 해부 실험과 동등한 시간과 노력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d) 거부권을 행사하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e) 대체 교육 과제를 선택한 학생은 해당 학습 과정에 대한 학점을 받기 위해 각 학습 과정의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f) 동물 해부 실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반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신에 의해 입증되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동물 해부 실험을 반대하는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동물 해부 실험을 활용하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 대체 교육 과제를 추구할 것인지 혹은 해당 실험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32255.3).<sup>28</sup>

다음으로 일리노이주는 공법 중 「해부실험의 대안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00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학기부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29</sup> § 5에서는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a) 연구와 교육에 실험동물에 대한 해부학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의학, 생명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의 발전에 큰 공헌해 왔다. 그러나 해부학적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그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부족할 때 실험동물은 비윤리적인 대우를 받고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학교에서는 동물생체 해부실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해부학적 수단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교육과 연구에서 전통적인 해부학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리노이주 내의 유치원, 1-12 학년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 10에서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험과 관련하여 학

<sup>28</sup>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DC&division=1.&title=1.&part=19.&chapter=2.3.&article\(2018.3.24. 최종 방문\)](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DC&division=1.&title=1.&part=19.&chapter=2.3.&article(2018.3.24. 최종 방문))

<sup>29</sup> [http://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pubact91/acts/91-0771.html\(2018.3.24. 최종 방문\)](http://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pubact91/acts/91-0771.html(2018.3.24. 최종 방문))

생은 일리노이 주 내의 공립·사립 초등 또는 중등학교의 학생을 의미하고, 교사는 일리노이 주 내의 공립·사립 초등 또는 중등학교의 정규교사를 비롯하여 시간제, 임시, 대체 교사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해부실험에 대하여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이나 동물의 일부분을 절개(cutting), 살생(killing), 보존(preserving), 박제(mounting)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15는 학생이 동물생체 해부실험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부할 경우, 학교는 그 학생이 해부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해부실험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대신 이를 완료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대체 과제는 해부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내포하여 그 학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용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에서는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초, 중등학교에 대하여 학생들과 그 부모를 비롯한 법적 보호자들에게 학교 교과과정 중 학생에게 수행 및 참여가 필요한 동물 해부실험 및 관찰에 대한 공지와 함께 학생들이 해부실험에 대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공지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25는 마지막으로 학생은 해부실험에 대한 참여, 수행, 관찰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학생선택정책(Student Choice Policies)

학생선택정책이 있는 주는 직접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동물해부실험 여부를 선택하는 정책을 두고 있는 경우와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생이 동물해부실험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두고 있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미시간주의 경우 2014년 미시간 주 교육위원회(Michigan State Board of Education)가 학생들이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혹은 동물 해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닐 수 있고, 동물 해부 실험 없더라도 동등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대안 교육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동물 해부 실험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물 해부 실험을 거부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sup>30</sup>

후자에 해당하는 주로 미네소타주를 들 수 있는데, 미네소타주는 1998년 학부모 교과 과정 검토(PARENTAL CURRICULUM REVIEW)에 관한 정책에서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생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각 교육 구는 18세 이상의 부모, 보호자는 미성년자 등에게 제공되는 학습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대체 교육을 위해 학교 직원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

<sup>30</sup> [https://www.michigan.gov/documents/mde/FINAL\\_Policy\\_Dissection\\_Choice\\_456675\\_7.pdf](https://www.michigan.gov/documents/mde/FINAL_Policy_Dissection_Choice_456675_7.pdf)

체 교육의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학업 성취 또는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sup>31</sup> 그러므로 동물 해부 실험이 학교의 교과과정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다면 학생은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를 거부하고 대체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3) 국가 과학교사 협회(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NSTA)의 가이드라인

NSTA는 학생들과 유기체 간의 상호 작용은 국가 과학 교육 표준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SES)에 요약된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NSTA는 교육자와 학교 관계자가 과학 커리큘럼에서 동물생체 해부실험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하며, 학생들에게 실제 동물 해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인하는 규정을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NSTA는 동물생체 해부실험과정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돌봄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동물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과 교육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교사는 동물 해부 실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초등급 교사는 학생의 나이와 성숙도를 잘 인식하여야 하며, 만약 교사가 해부에 대한 대안이 학생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사는 의미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교육자는 그 해부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함을 지적하고 있다.

NSTA 이사회에서 2005. 6.부터 채택하여 2008년 3월에 개정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동물생체 해부실험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교사는 그 실험을 불편해하거나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부의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할 것,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배려와 감사로 실험실 및 해부 활동을 수행할 것, 학생들의 성숙 수준에 적합한 실험실 및 해부 활동을 계획할 것,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동물을 구입하여 신선한 표본을 사용할 것, 실험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체계적 작업 공간에서 실험실 및 해부 활동을 수행도록 할 것, 온수 및 비누를 포함하여 적절한 환기, 조명, 가구 및 장비로 적절한 물리적 환경에서 해부를 실시할 것, 학생, 교사 및 교실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장갑, 화학 비산 방지용 고글 및 앞치마와 같은 개인 안전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것, 동물 표본 처리에 대한 알레르기 및 감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 사용된 개체는 적절하게 폐기할 것, 가위, 메스 기타 예리한 도구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것, 신중하게 계획된 커리큘럼 목표에 기초하여 실험실 및 해부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sup>31</sup> <https://www.revisor.mn.gov/statutes/?id=120B.20>(2018. 3. 24. 최종 방문)

## IV.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 제한 여부 및 규제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 해부 실험은 명문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규제를 정할 것인지, 앞서의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규정의 구성 형식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의 제한에 관련된 법체계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체계와 이를 전면 혹은 일부 허용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sup>32</sup>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과학적·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는 법체계의 법령해석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을 해석할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일부 허용하는 경우의 체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체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일리노이주법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교육적 목적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절차를 통하여 규제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는, 동물 해부 실험이 미치는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를 취하는 입장보다는 일부를 허용하면서 학생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보인다.

<sup>32</sup> 외국의 사례 중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동물생체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있고, 동물해부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모형 등이 있어 대체 가능한 경우 동물해부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카타로니아가 있으며, 법적인 금지는 아니나 교육부나 위원회에서 해부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로 슬로바키아나 스웨덴이 있다; 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각주 3), 45-46면.

## 2. 어느 법률을 통하여 개정안을 도입할 것인지

우리나라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이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때 그 규정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양법률 간 규정 해석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종래 학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sup>33</sup> 양법률을 관장하는 부처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실험동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동물실험시설의 주체 및 관리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시설의 주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기술하여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미성년자에게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으나,<sup>34</sup> 동물실험에 관한 관리·감독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은 정규 교과과정을 통하여 교육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처럼 교육관련법령에 해당 내용을 도입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에 개정내용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sup>33</sup> 박창길, 위 논문(각주 10), 41면, 최철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지도·감독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태의 검토”, 법학논집 제30권 제2호(2008. 11), 226면.

<sup>34</sup> 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각주 3), 46-48면.



### 3. 학생의 선택권의 보장과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을 교과과정 내에서 허용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학생의 실험 거부권 및 대체 과제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sup>35</sup> 동물해부실험에 대하여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때 학생의 동물 해부 실험 거부권 행사와 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각 주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미성년자로서 우리나라 가치관에 있어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네소타주에서의 예와 같이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학생이 동물 해부 실험을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체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학생의 동물 해부 실험 거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동물 해부 실험을 대체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미성년 학생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벗어나 동물을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sup>36</sup>

### 4.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사전·사후의 관리의 필요성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학생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sup>35</sup>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 부과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다수의 하급심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도 그 중 하나인데, 법원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만큼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규범조화적·헌법합치적 해석이 필요한데,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형태의 군복무가 약 13%에 이르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군사력 저하를 논하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sup>36</sup> Marcia Goodman Kramer, 위 논문(각주 24), pp. 285-286.

실험이 지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하여 사전·사후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의 실험 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물권과 생명존중, 동물실험윤리에 관하여 선행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교과과정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격을 갖춘 과학교사를 통하여 교과과정 내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 과학교사 협회(NSTA)의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교사 역시 동물실험윤리와 동물실험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연마한 후에 학생들에 대한 동물 해부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은 정규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교육 목적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설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허용범위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이 교육 목적임을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 사설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비롯하여 생물학적 위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설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인준된 실험동물 판매처가 아닌 일반 동물가게에서 사온 토끼, 햄스터 등을 해부하고 실험 후 폐기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버려지는 사례가 많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사설학원에서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을 통한 실사나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황이고, 사설학원을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설학원에서의 동물 해부 실험은 금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동물 해부 실험 외에도 동물 관찰이나 동물 행동 실험 역시 실험동물에게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물실험의 유형 역시 미성년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전개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 해부 실험의 경우는 동물 관찰이나 동물 행동 실험보다 침습적이고,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하여도 스트레스와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가능성에 대하여

<sup>37</sup> 2014. 3. 3. 자 헤럴드경제 기사, 학원이 초중생 대상 ‘해부학 교실’ 논란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더구나 동물 해부 실험의 경우 필연적으로 위험한 도구인 메스의 사용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유해균이나 바이러스의 노출로 인한 학생들의 감염 가능성,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등 실험 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해부 실험은 생물학, 동물학, 의학 등과 관련된 직업의 특수성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 전제로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본인이 진로의 선택을 위해 동물 해부 실험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편,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과정에서도 동물을 살상하는 실험실(Terminal Animal Labs)과 같은 곳은 학생이 거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sup>38</sup>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직접 해부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한지 및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과과정의 단계에서, 어떠한 동물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관 부처인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주재로 학계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7. 7. 24.부터 같은 해 9. 3.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동물생체해부실험의 대체방법에 관하여 ‘국민생각함’ 활용 여론 수렴을 추진하기도 하였는데,<sup>39</sup> 향후 이러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교과과정이나 법제에 반영될 것인지는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Received: February 28, 2018

Revised: March 22, 2018

Accepted: March 26, 2018

---

<sup>38</sup> Marcia Goodman Kramer, 위 논문(각주 24), pp. 286-287.

<sup>39</sup> 위 “국민생각함” 활용 여론수렴 계획(위 각주4), 3면.